

기업해당업종	관련법령	세부사항
아.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제외)	관광진흥법	여행업
		관광숙박업 :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유람선, 크루즈)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 일반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극장유희업, 관광식당업, 관광편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시내순환관광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궤도업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사진업	
자.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말함.
차. 재가장기요양기관운영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카. 전시산업	전시산업발전법	전시시설을 건립 · 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 · 개최 ·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 · 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 · 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
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운영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	㉔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 · 용역사업, ㉕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㉖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㉗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㉘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과 ㉙직업전문학교 · 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함.
하.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거. 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이공계 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 · 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업종을 말함.
너. 주택임대관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㉚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㉛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말함.
더.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지원 내용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 ① 기업상속재산가액
  - ② 피상속인 경영 기간별 한도액 :  
10년 이상 → 200억원, 15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

### 기업상속재산

- ① 개인기업 :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 ② 법인기업 : 기업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주식 등 가액 × (1 - 사업무관자산\* / 법인총자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열거된 자산

-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기업으로 영위한 경우 기업상속공제의 전체 한도는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기업상속공제를 한도로 하고, 개별 기업의 공제한도는 각 개별 기업의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

## 사후 관리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sup>4)</sup> 및 이자상당액<sup>5)</sup> 추징

- 기업용 자산의 20% (5년 이내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일정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거나 국가 등에 증여, 내용연수가 지나 처분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이나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상속인 등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된 업종의 변경 및 1년 이상 휴업, 폐업한 경우는 포함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조직변경 또는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지분이 감소하였으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해당 시 제외

4) 7년 이내 위반 시 100% 추징하며, 이후 1년경과 시 마다 10%씩 낮은 추징률을 적용  
단, 이월과세로 증가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

5) 추징될 상속세상당액 × (당초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 ~ 사유발생일) × 연1.8%

-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직전 2개연도 정규직 평균고용 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
  - ②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
  -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④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6조, 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용어 해설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 이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①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②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 ③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최대주주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 기준고용인원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



### 질문과 답변

**질문 1** > 개인사업자로 2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12월에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인 저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최대주주 지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사 답변** >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기간이 포함 가능하므로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sup>6)7)</sup>

**질문 2** > 저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학원법인을 상속받아 계속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건물과 토지는 제 명의로 변경하고 학원법인에 임대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부 전환하기는 했지만 가업상속재산은 처분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인 제가 계속 보유하여 유지하고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요?

**세무사 답변** >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으로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개시 후 10년 동안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정도로 상속인이 계속하여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 세제상 지원하는 것이므로, 학원업에 사용되던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함으로써 업종을 일부 전환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sup>8)</sup>

6) 서면상속증여2015-611 (2015.06.11.)

7) 기준법령해석재산2015-22(2015.10.28.)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기간 기산일 판단 기준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입니다.

8) 조심2013부1082(2013.06.28.)

### 상속세 계산 흐름도 및 기업상속 지원 내용

#### 상속 재산

(+) 추정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과세가액불산입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 공제

→ 기업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	4억6천만

####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용어해설참조

(-) 세액공제 등

(-) 연부연납, 물납세액 등

→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적용

#### 자진납부할세액



## 용어 해설

- 세대생략할증세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단,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는 제외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A제조업과 B도매업을 운영하던 나 사장은 58세의 나이에 갑작스런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에만 매진하느라 여유 자금을 넉넉히 형성하지 못했던 나 사장은 이대로 있다가 불시에 사망할 경우 30년 동안 어렵게 이룬 가업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공중분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문득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다음날 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세무사를 만난 나 사장은 세무사의 질문에 맞춰 30년을 운영한 A회사와 27년을 운영한 B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A회사는 평가액이 90억 정도로 나 사장이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액 60억 정도의 B회사는 지분의 70%를 소유하고, 양 법인 모두 운영기간 내내 대표로 있었고, A회사는 큰아들에게 B회사는 작은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으므로 5년 전부터 아들들은 각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세무사는 2015년까지만 해도 상속인 중 1인이 가업전부를 상속받아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2016년부터는 공동상속 및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각 상속인들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모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A회사, B회사 주식가액 각각 공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 사장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주식평가액인 150억 정도를 가업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 회사와 가족들 걱정은 접고 남은 생애 집중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세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나 임원은 아버지인 나 사장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액을 계산하고 제출서류를 작성해 봅시다.

편의상 상속세 과세가액은 270억원이며, 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공제와 기타공제 10억원만이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상속현황
  - 피상속인 나 사장 : A법인의 설립자로 대표이사 (법인설립일 : 1971. 4. 2)
  - 상속인 : 자녀 나 임원 (A법인 임원, 재직기간 3년)
  - 상속개시일 : 2017. 1. 5.
- (주)절세(중소기업)의 주주 및 주식현황
  - 주주현황 : 피상속인 나 사장 (100%)
  - 업종 : 제조업
  - 발행주식 총수 및 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가액 : 150,000주, @80,000
- (주)절세의 자산 현황
  - 총자산가액 : 500억원 (사업무관자산가액 200억원)
  - 임대부동산 : 70억원
  - 업무무관자산(토지) : 70억원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 : 60억원
- 상속현황 :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모두를 가업에 종사하는 자녀 나 임원이 단독 상속
- 가업상속공제액은 얼마일까요?
  1. 가업영위기간 : 20년 이상
  2. 가업상속재산가액 :
    - 주식의 가액 : 150,000주 × @80,000 = 120억원
    - 사업무관자산비율 : 40% ( 200억원 / 500억원)
    - 가업상속공제액 : (①과 ②중 작은 금액) : 72억원
    -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 120억원 × (1-40%) = 72억원
    - ② 한도액 : 500억원 (20년 이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015.03.13. 개정)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앞쪽)					
① 관리번호		-			
신고인	② 성명	나 임원	③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子
	④ 주소	( ☎ )		전자우편 주소	
피상속인	⑤ 성명	나 사장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⑧ 상속원인		사망	⑨ 상속개시일	2017. 01. 05	
구분		금액	구분	금액	
⑩ 상속세과세가액		27,000,000,000	㉕ 신고불성실가산세		
⑪ 상속공제액		8,200,000,000	㉖ 납부불성실가산세		
⑫ 과세표준 (⑩ - ⑪)		18,800,000,000	㉗ 납부할세액(합계액) (⑬ - ⑭ - ⑮) + ⑰ + ⑱ + ㉘		
⑬ 세율		50%	납부방법	납부신청일자	
⑭ 산출세액		8,940,000,000	㉙ 연부연납세액		
⑮ 세대생략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0	㉚ 물납		
⑯ 산출세액 (⑭ + ⑮)		8,940,000,000	현금	⑳ 분납	
⑰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㉛ 신고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015.03.13. 개정)

가업상속재산명세서			
(앞쪽)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구분	자산종류	금액	
기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	:	
	기타		
	① 계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12,000,000,000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③ 총자산가액		50,000,000,000
	사업무관자산 가액	㉜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20,000,000,000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30,000,000,000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60%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7,200,000,000	
다. 한도액 계산			
⑧ 가업영위기간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① 또는 ⑦)	⑩ 한도액	⑪ 가업상속공제액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10년 이상 15년 미만		200억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7,200,000,000	500억원	7,200,0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015.03.13. 개정)

<b>가업상속공제 신고서</b>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b>가. 가업현황</b>				
상 호(법인명)	(주)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성 명(대표자)	나 임원	주민등록번호		
개업연월일	1971. 4. 2	업 종	제 조 업	
사업장 소재지	( ☎ )			
중소기업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상장 여부(상장일)	<input type="checkbox"/> 상장( . .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상장	
	<input type="checkbox"/> 해당 안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b>나. 피상속인</b>				
성명	나 시장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1971.04.02. ~ 2017.01.05	대표이사(대표자) 재직기간	1971.04.02. ~ 2017.01.05	
최대주주등 여부	여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을	100%	
<b>다. 가업상속인</b>				
성명	나 임원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2013.01.01.~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2013.01.01	
주소	( ☎ )			
<b>라. 가업상속재산 명세</b>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주식	150,000주	80,000	12,000,000,000	
<b>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b>				
			7,200,000,000원	

# 기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기업상속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10-2**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경우 일반 상속세와 달리 일정한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분납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승계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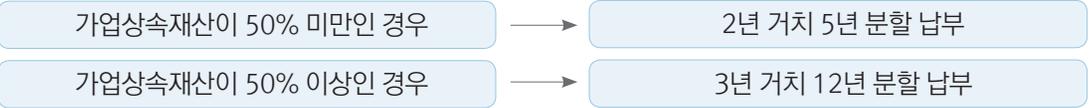
##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text{연부연납 특례 대상 상속세액} =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기업상속재산}}{\text{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납부세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및 납세담보 제공

## 지원 내용



## 유의 사항

- 기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이 특례대상
- 매년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 초과

## 절차 및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령 제68조, 국세징수법 제14조

## 절차 및 제출서류

- 연부연납 : 조세의 일부를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조세를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

기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10-3

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상속)하여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 지원 대상

- 일정한 요건을 만족한 중소·중견기업<sup>9)</sup>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

#### 증여자 요건

- 60세 이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 경영
-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 소유



####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 3월 이내 기업에 종사
-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 지원 요건

- 증여자 요건
  - ① 연령 요건 : 60세 이상
  - ② 경영 요건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
  - ③ 지분 요건 : 해당 기업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 30%) 이상 소유
- 수증자 요건
  - ①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 ② 재직 요건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기업에 종사
  - ③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9) 10-1장 기업상속공제 참조

## 지원 내용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 적용 (100억원 한도)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 사후관리

증여 후 7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로 다음의 사유 포함
  -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포함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 유의 사항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배제
-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제도 배제
- 가업의 주식을 받는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100억원을 한도로 합산하여 정산



## 절차 및 제출서류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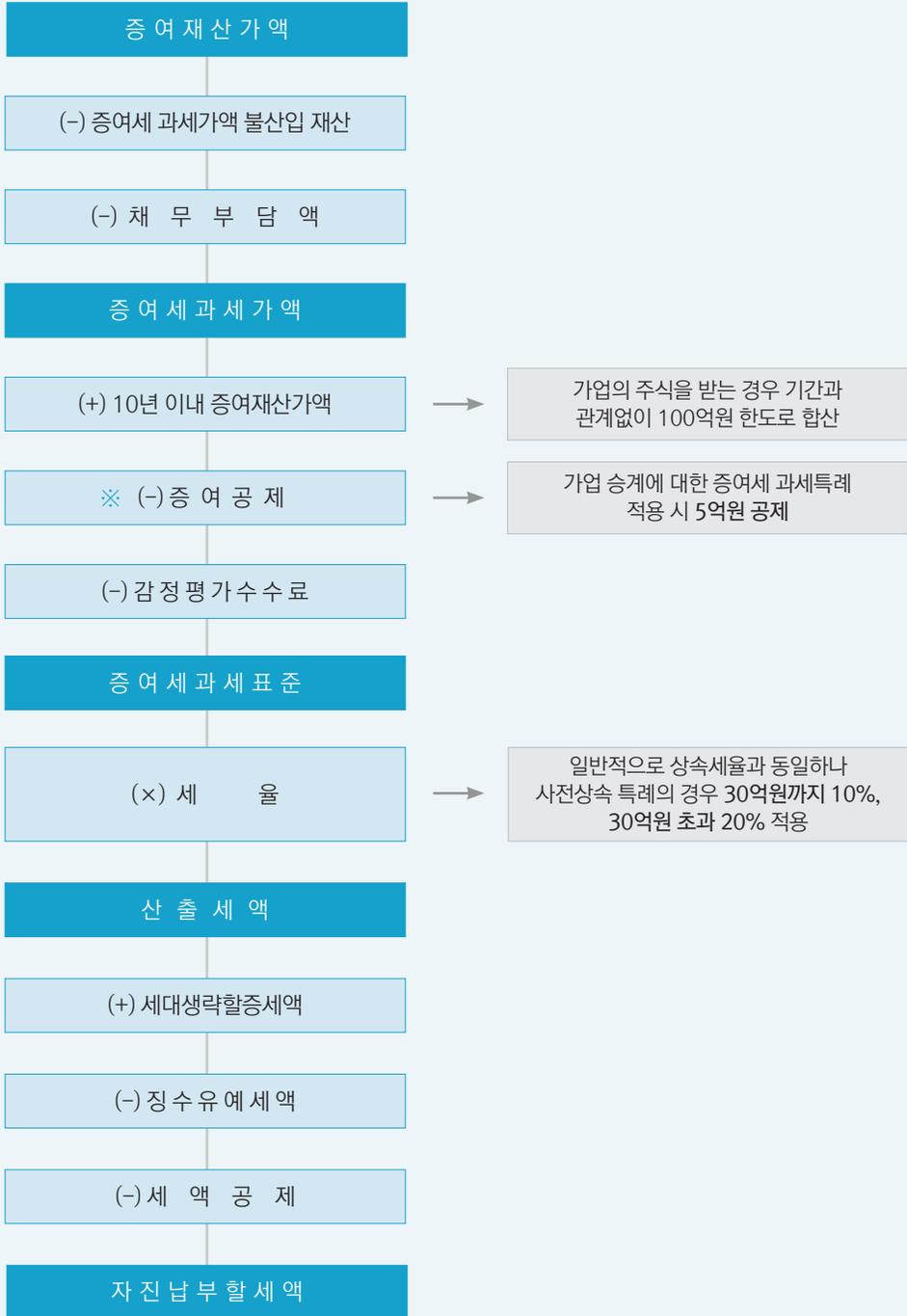
## 질문과 답변

**질문** 부산에서 어묵 공장을 20년 이상 운영하신 부친의 어묵 제조업을 물려받고자 5년전 어묵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여 현재까지 개인과 같은 어묵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부친의 명의로 어묵 제조 법인에 임대를 주고 있으며 현재 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부친이 95% 제가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10년 이상 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된 경우로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인 10년 이상 가업 요건을 판단 시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출자하여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이는 법인 전환이 아니고 신설이므로 개인사업자 영위기간은 포함될 수 없으며,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인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sup>10)</sup>

10) 서면상속증여2015-2127(2015.11.16.)

### 증여세 계산 흐름도 및 기업상속 지원 내용





2017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

[www.smba.go.kr](http://www.smba.go.kr)

# 제 11 장

## 조세특례의 제한 등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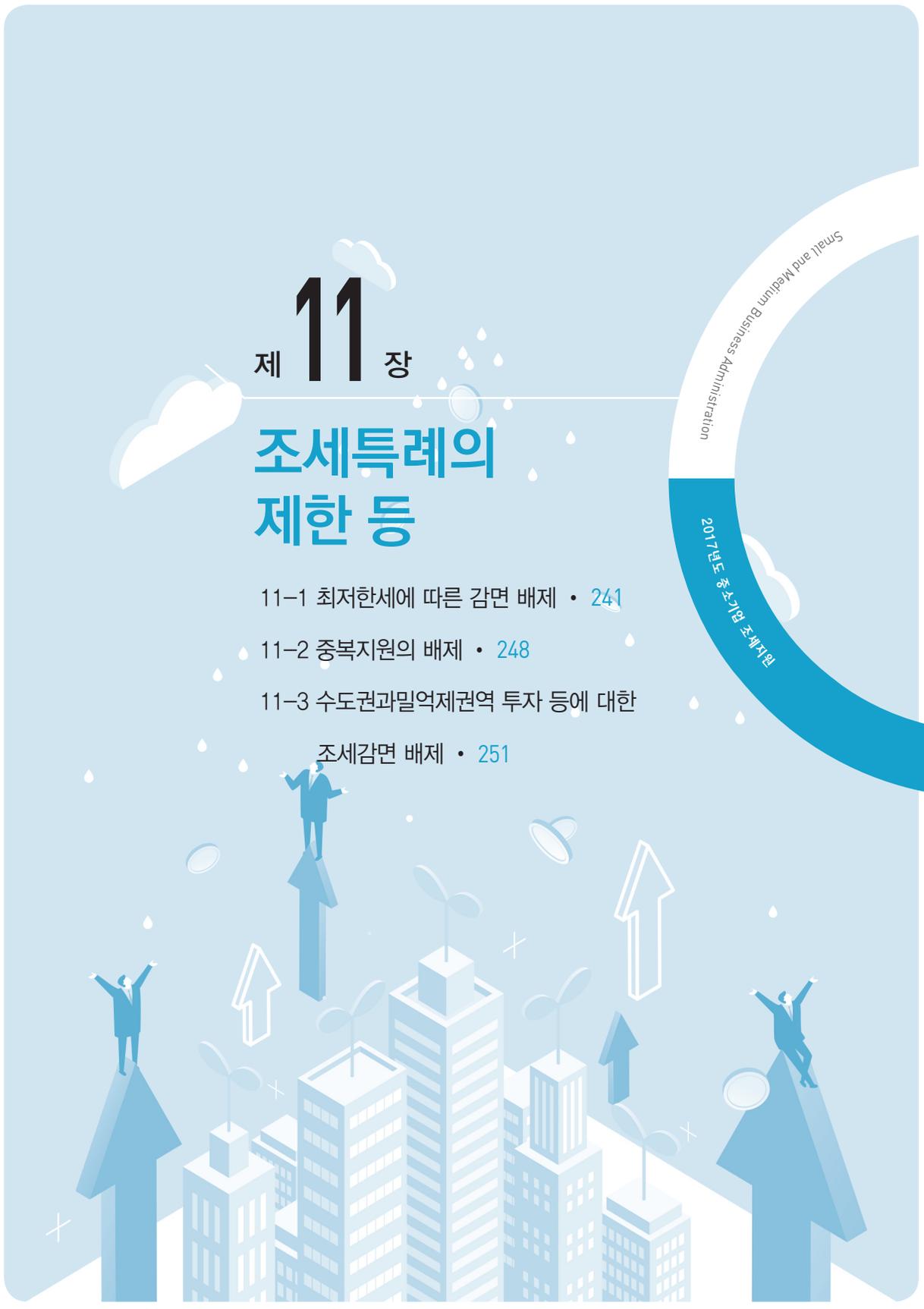
11-2 중복지원의 배제 • 248

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251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7년도 중소기업 정책지원





#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세금을 감면받는 법인

11-1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념,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

공제율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그 외 중견·대기업		
		1~3년	4~5년	과표 100억이하	과표 100억~1천억원	과표 1천억이상
최저한세	7%	8%	9%	10%	12%	17%

### 최저한세란?

- 의의 :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6조)
  - 외국법인의 지점세(법인세법 제96조)
  -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준비금,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 Max [①, ②]
  -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7%(일반기업 8%~17%)
  -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 주요 적용대상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6-2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3-2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3-4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5-11	제28조의 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8-3	제60조 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4	제61조 제3항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8-2	제63조의 2 제5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4-6	제136조 제1항	중소기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세액공제	5-1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4-3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6-1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아닌 자만 해당)
	6-3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4	제12조 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6-6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6-7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3-3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5-3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8	제25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7	제25조의 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9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10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9-4	제29조의 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7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8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9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내용	
세액공제	9-5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9-3	제30조의 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7-1	제31조 제6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5-5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세액감면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4	제12조 제1·3항	기술이전 및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6-5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7-1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4	제33조의 2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1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8-6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7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

###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공제의 적용순서

-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동일한 호안에서는 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함)에 따라 감면을 배제
  - ① 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②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③ 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 ④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 ⑤ 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 최저한세가 적용 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



### 지원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시행령 제126조

###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야심차게 준비한 핫님빵이 인기를 얻어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2017년 중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종원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층 품미가 깊은 고급화된 제품 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절세의 나사장은 2017년 매출이 급성장하였지만 사업확장으로 많은 투자를 하였고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감면을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 세무사 답변

주식회사 절세의 사업용 자산 투자, 고용 증가, 연구개발비 투자 등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2017 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전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및 이월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년 주식회사 절세의 납부할 세액

① 과세표준 계산 및 산출세액

- 당기순이익 : 420,200,000원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접대비부인액) : 24,300,000원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대손 부인액 손금추인) : 12,000,000원
- 과세표준 : 432,500,000원
- 산출세액 : 66,500,000원

② 세액공제 · 세액감면 대상 세액

- 최저한세 적용 대상 (57백만원)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45,000,000원
  -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12,000,000원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6,000,000원)

③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 공제 가능 세액

- 최저한세 : 30,275,000원(432,500,000 × 7%)
- 공제 가능 세액 : 36,225,000원(66,500,000원 - 30,275,000원)
- \* 공제 배제세액 : 57,000,000 - 36,225,000 = 20,775,000원

④ 납부할 세액 (14,275,000원)

- 산출세액 66,500,000원
- 공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36,225,000원), 최저한세 적용 제외(16,000,000원)

⑤ 이월 세액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20,775,000원)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3.14>

(앞쪽)

사업 연도	2017.01.01. ~ 2017.12.31.	<b>최저한세조정계산서</b>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구분	코드	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 후 세액
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420,200,000			
⑪ 소득금액산입	02	24,300,000			
⑫ 조정금액손금산입	03	12,000,000			
⑬ 조정 후 소득금액 (⑩+⑪-⑫)	04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					
⑭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⑩ + ⑪ - ⑫)	10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					
⑮ 차가감소득금액 (⑩ - ⑪ - ⑫ + ⑬ + ⑭)	15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⑯ 소득공제	16				
⑰ 최저한세적용대상소득	17				
⑱ 과세표준금액 (⑮ - ⑯ + ⑰)	18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⑲ 선박표준이익	24				
⑳ 과세표준금액 (⑱ + ⑲)	25	432,500,000	432,500,000		432,500,000
㉑ 세율	19	20%			
㉒ 산출세액	20	66,500,000	30,275,000		66,500,000
㉓ 감면세액	21				
㉔ 세액공제	22	57,000,000		20,775,000	36,225,000
㉕ 차감세액 (㉒ - ㉓ - ㉔)	23				30,275,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개정 2016.03.07>

(앞쪽)

사업 연도	2017.01.01. ~ 2017.12.31.	<b>세액공제조정명세서(3)</b>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근거법조항	계산기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3/100	131		45,000,00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	166		16,000,00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청년(만16~29세)근로자 순증원분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원분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	14Q		12,000,000
합		계	1A1		73,000,000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연도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⑰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⑱ 기타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⑳ 공제세액 (⑰ - ⑱ - ㉑)	㉒ 소멸	㉓ 이월액 (⑰ + ㉒ - ㉓)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①1차 연도	①2차 연도	①3차 연도	①4차 연도						①5차 연도
166	2017	16,000,000		16,000,000						16,000,000	0	0	16,000,000	0
	소계													
131	2017	45,000,000		45,000,000						45,000,000	20,775,000		24,225,000	20,775,000
	소계													
14Q	2017	12,000,000		12,000,000						12,000,000	0		12,000,000	0
	소계													
합	계	73,000,000		73,000,000						73,000,000	20,775,000*		52,225,000	20,775,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16.03.07> (제1쪽)

사업연도	2017.01.01. ~ 2017.12.31.	<b>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b>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세액공제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공제)세액
세액공제	⑬ 소 계		170		
	⑬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⑬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⑬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66	16,000,000	16,000,000
	⑬ 소 계		180	16,000,000	16,000,000
⑭ 합 계 (⑬ + ⑭)		110	16,000,000	16,000,000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세액공제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액공제	⑮ 소 계		30			
	⑮구 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	⑦공제세액
	⑮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45,000,000	24,225,000
	⑮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32			
	⑮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14Q		12,000,000	12,000,000
⑯ 소 계		149		57,000,000	36,225,000	
⑰ 합 계 (⑮ + ⑯)		150				
⑱ 공제감면세액 총계 (⑮ + ⑱)		151			36,225,00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3.14.>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주식회사 절세		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표자 성명 나사장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경상북도 포항시 OO(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③ 신청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⑩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4항	131	3%	45,000,000	24,225,000
	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영 제9조제9항	132	25%	16,000,000	16,000,000
	⑫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3항	14Q	100%	12,000,000	12,000,000
	⑬ 세액공제 합계		1A3		73,000,000	52,225,000

##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을 받는 법인

11-2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이 중복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조세지원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하여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지원을 배제

- ① 동일 자산에 대하여 아래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이 불가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자산별로 각각 투자세액공제를 달리 적용 가능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5-1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3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8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7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9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5-5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②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는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9-3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9-9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 세액공제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5-1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6-3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3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5-3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8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5-4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7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9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10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2	제26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9-9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9-3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5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감면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5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7-1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4	제33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1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2	제63조의2 제2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8-6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8-7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4-9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6	제104조의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④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3-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5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7-1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2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7-4	제33조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1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8-2	제63조의2 제2항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8-6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4-8	제85조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5-6	제104조의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법인

11-3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 대상

-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 ②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 적용

● 배제 대상자산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당해 공장의 연면적: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단,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

- ② 그외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배제대상 자산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 § 5①1,2	사업용자산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②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 24①1,2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③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 25 (①7,9는 제외,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해외자원 개발설비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 25조의5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배제 대상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

● 배제 대상자산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를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조세감면 적용

● 조세감면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배제대상 자산
①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 24①1,2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②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 25 (①7,9는 제외)	소방시설과 소방관련 물품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 방지시설 해외자원 개발설비
③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 § 25조의5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구 분	1990.1.1. 이후 사업개시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증설투자	대체투자	증설투자	대체투자
일반기업	×	×	× (산업단지·공업지역 ○)	○
중소기업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li> <li>▪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li> <li>▪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데,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li> <li>▪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li> <li>▪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li> </ul>
성장관리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li> <li>▪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li> <li>▪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li> <li>▪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li> <li>▪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송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술리·내강리만 해당)</li> <li>▪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li> <li>▪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li> </ul>
자연보전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li> <li>▪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li> <li>▪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li> <li>▪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li> </ul>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

### 〈사업장 소재지별 공제·감면 배제〉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배제, 단, 벤처기업은 감면 허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공제 배제
-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배제, 다만, 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전환하는 경우 허용



## 2017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발행일 2017년 5월  
발행처 **중소기업청**  
기 획 중소기업정책국 정책총괄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TEL. 042) 481-4363  
**한국세무사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명달로 105  
TEL. 02) 587-3572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go.kr>

### 집 필 진

장기락 세무사  
이대규 세무사  
여지윤 세무사  
최대영 세무사  
권오정 세무사  
임금숙 세무사  
김영철 사무관